

군의 질서유지를 위한 병력 출동 관련 문제 검토

□ 개요

군의 치안질서 유지를 위한 병력출동의 각 근거와 한계에 관한 검토임

□ 치안질서 유지와 군의 역할

- △ 군의 원칙적인 임무는 국내치안질서 유지가 아닌 외적으로부터의 국가 및 국토를 보전하는 것임.

“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..” (헌법 제 5 조)

- △ 대내적 치안 질서유지는 원칙적으로 경찰이 수행하며, 예외적으로 경찰력에 의한 질서유지가 곤란할 경우 계엄절차를 거쳐 군을 투입하도록 규정 (헌법 제 77 조)
 - 이는 군대("병력으로써")가 국내질서유지(“공공의 안녕질서”)에 투입되는 것을 허용하는 유일한 헌법규정임.
 - 헌법규정에 의하지 않고는 군은 국내질서유지에 투입될 수 없다는 한계규정의 의미로 이해됨.

☞ 독일기본법은 방위를 위한 경우 외에는 기본법이 명문으로 허용하는 경우에만 군대가 투입될 수 있다는 원칙을 규정(Art. 87a II GG.)

□ 각 병력출동의 근거와 한계

【비상계엄에 근거한 병력출동】

- △ 비상계엄 시, 계엄사령관이 계엄지역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하므로, 병력출동을 포함하여 군이 주도적으로 치안질서 유지 활동 할 수 있음.
- △ 비상계엄 시,
 - 1)군사법원의 민간인에 대한 재판권 행사
 - 2)체포, 구금, 압수, 수색, 거주, 이전, 언론, 출판, 집회, 결사 또는 단체행동에 대한 특별한 조치를 통하여 질서유지 활동 여건 보장

【위수령에 근거한 병력출동】

위수령 제 12 조

재해 또는 비상사태에 즈음하여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로부터 병력출동의 요청을 받았을 때는 육군참모총장에 상신하여 그 승인을 얻어 이에 응할 수 있다.

- △ 위수령의 ‘비상사태 시병력출동’은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재해복구와 같은 물리적 복구 및 경찰 등 행정청의 치안유지 활동을 보충하는데 그쳐야 하며, 군에 의한 주도적인 치안유지 활동은 불가함
 - △ 위수령에 의한 병력출동은 경찰에 의한 치안유지를 위한 행정응원적 성격이므로 병력이 출동되더라도 임무 수행은 보충적으로 제한됨
- ☞ 행정응원은 다른 행정청의 행위에 대한 보충적인 협조에 그쳐야 함
- △ 과거 위수령을 근거로 군병력이 민간 치안을 대신하여 개입한 사례 있으나, 그와 같은 형태의 병력출동 및 활동이 이루어질 경우 위헌, 위법이라는 반발에 직면할 가능성이 매우 크며, 사후불법행위 책임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이 매우 큼

【부대직제령에 근거한 병력출동】

- △ 야전군사령부령(제 6 조), 작전사령부령(제 6 조제 2 항), 군단사령부령(제 6 조), 보병사단령(제 8 조), 해병사단령(제 8 조) 역시 비상사태 시 광역시장 및 도지사 등에 의한 행정응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

야전군사령부령 제 6 조(병력출동)

사령관은 재해 또는 비상사태에 있어서 특별시장, 광역시장, 특별자치시장,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병력출동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합동참모의장의 승인을 얻어 이에 응할 수 있다.

- △ 위수령과 야전군사령부령 등 부대직제령에 병력 출동 조항이 병존하여, 광역자치단체장의 병력출동 요청을 받은 경우, 군의 입장에서 병력을 출동하는 근거가 위수령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야전군사령부령 등의 직제령에 의한 것인지가 불분명해지는 문제 있음
- △ 야전군사령부령 등은 병기사용, 경찰관 요청에 의한 민간인의 체포, 호위병의 제공에 관한 규정은 없음

【기타 병력출동 규정 : 내적 요인에 의한 치안불안상태와는 무관】

- △ 통합방위법에 의한 병력출동 : 적 침투 도발 상황에 대비
- △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: 재난 사태에 대비
- △ 테러방지법 : 대테러 상황에서 경찰의 대테러작전 지원

* 긴급명령 : 대통령 긴급권의 일종이나, 군의 출동과는 무관

□ 비상사태로 인한 병력출동 요청 시 군의 대응방안

- △ 계엄법상(제 2 조 제 6 항) 국방부장관(행정자치부장관도 건의 가능)은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선포를 건의할 수 있음
- △ 그러나 적과 교전 상태가 아니면서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된 경우는 치안질서 유지에 1 차적 책임이 있는 행정자치부장관이 계엄선포를 건의하는 것이 타당
- △ 위수령에 의한 병력 출동은 광역자치단체장의 요청에 의한 것이나, 위수사령관은 치안유지에 대한 조치에 관하여 자치단체장과 협의할 수 있으므로, 병력출동에 관하여 능동적으로 협의 요청은 할 수 있을 것으로 해석됨

위수령 제 10 조 (치안유지)

위수사령관은 재해 또는 비상사태에 있어서 치안유지에 대한 조치에 관하여 그 지구를 관할하는 시장·군수 및 경찰서장에게 협의하여야 한다.

□ 치안유지 목적의 병력출동 시 군의 무기사용 가능 범위

- △ 광역자치단체장의 요청에 의하여 병력출동 시, 위수령 상의 근거가 없더라도 군의 무력행사가 당연히 가능한 상황인 자위권 행사 또는 현행범 체포 등의 경우에는 비례의 원칙 및 최소침해성에 입각한 소극적 무기 사용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

☞ 병력 출동하여 치안유지 활동 시, 경찰관의 치안유지 활동을 응원한다는 점에서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준하여 제한적인 무기 사용 가능

경찰관직무집행법 제 10 조의 4 (무기의 사용)

경찰관은 범인의 체포, 범인의 도주방지,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의 방어 및 보호,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제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 한 한도에서 무기 사용할 수 있다.

□ 광역자치단체장의 병력출동 요청 시 부대장의 대응방안

- △ 대통령령(위수령 및 부대직제령)에 근거한 광역자치단체장의 요청은 행정응원 요청이며, 행정절차법은 행정응원 요청에 대하여 그 응원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하고 있음
- △ 행정절차법에서 정하는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응해야하는 것으로 이해됨

행정절차법 제8조 제2항

제1항에 따라 행정응원을 요청받은 행정청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응원을 거부할 수 있다.

1. 다른 행정청이 보다 높을 적이거나 경제적으로 응원 할 수 있는 명백한 이유가 있는 경우
2. 행정응원으로 인하여 고유의 직무수행이 현저히 지장 받을 것으로 인정되는 명백한 이유가 있는 경우

- △ 군 입장에서는 위수령 또는 부대직제령에 의한 광역자치단체장의 요청 있을 경우에 대비하여 병력출동 부대 및 그 규모, 무기 휴대범위, 행동 준칙, 경찰과의 임무 분장 및 지휘체계 등에 대한 사전 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함.
- △ 다만, 그 비상사태가 군의 경찰 보충적 치안유지 활동만으로는 질서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,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행자부 장관과 협의하여 계엄령이 선포되도록 한 후, 법적 여건이 보장된 상태에서 질서유지를 위한 병력출동을 하는 것이 타당